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20. 권영숙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10.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권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 5)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본문 16개 조항과 1개의 부칙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실적의 평가,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공적인 있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0년 9월말 기준 우리 구 등록장애인수는 13,005명으로 이는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 373,508명의 3.48%에 해당함.(표1 참조)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5,463명으로 43.39%로 가장 많고, 이어 청각장애인 1,874명 14.41%, 시각장애인 1,473명 11.33% 순으로 파악됨.(표2 참조)

[표1] 마포구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급별 장애인 수	간	뇌병 변	뇌전 증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 성장 애	장 루. 요 루	정신	지적 장애	지체	청각	호 흡 기
심한	4,921	6	863	11	345	453	21	5	49	200	22	499	858	1,081	461	47
심하지않은	8,084	77	527	24	1,128	168	10	6	68		97			4,562	1,413	4
계	13,005	83	1,390	35	1,473	621	31	11	117	200	119	499	858	5,643	1,874	51

[표2] 마포구 장애유형 등록 비율(%)

간	뇌병변	뇌전증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 성장 애	장루. 요루	정신	지적 장애	지체	청각	호흡기
0.64	10.69	0.27	11.33	4.78	0.24	0.08	0.90	1.54	0.92	3.84	6.60	43.39	14.41	0.39

-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장애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수혜대상과 지원계획 및 조성기준 등이 상당부분 유사한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요구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